

##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3년 03월 23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연	이 *연 1932-07-07	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(정자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3-14
서 *란	서 *란 1950-06-10	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(정자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3-14
김 *훈	김 *훈 1988-10-17	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(정자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3-14